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	
번 호	2089

제출일자 : 2022. 3. 11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정보 공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」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(주민에 대한 정보공개)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법을 보완하여 정보공개 주체와 범위를 지정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26조,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조 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2. 1. 28.~ 2. 17.) 결과 : 의견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”를 “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과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에 따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 <u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</u> 」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</u> 」 및 같은 법 시행령과 「 <u>지방자치법</u> 」 제26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□ 지방자치법

제26조(주민에 대한 정보공개)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, 집행기관의 조직,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(이하 “지방자치정보”라 한다)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